

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용석(도봉) 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 번호 | 1629 |
|----------|------|

발의년월일 : 2017년 2월 6일
발 의 자 : 김용석(도봉)·서윤기·김혜련
김정태·유광상·오경환
박운기·유동균·이병해
박호근 의원(10명)

1. 제안이유

-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시정부가 독점적으로 행사하는 예산 편성과정에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편성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하는 참여민주주의의 제도적 장치임.
- 서울시 예산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음에도 주민참여예산사업 편성액이 고정되어 있어 이를 개선하고 주민참여활성화를 위해 주민참여예산사업 편성액의 기준을 정율로 개선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주민참여예산 예산편성과정에 사업공모 규모를 규정함(안 제6조제2항 신설).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규 :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
- 다.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주민참여예산의 범위) ② 예산편성과정에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공모 규모는 해당 연도의 전년도 일반회계예산의 1000분의 3 이상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8 회계연도 예산안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p>제6조(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생략)</p> <p><신설></p> | <p>제6조(주민참여예산의 범위)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p> <p>② 예산편성과정에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공모 규모는 해당 연도의 전년도 일반회계예산의 1000분의 3 이상으로 한다.</p> <p>부칙</p> <p>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적용례)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8 회계연도 예산안부터 적용한다.</p> |